

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8. 17.(금) / 총 8매(본문 4)
담당부서	항공산업과	담당자	• 과장 김도곤, 사무관 좌명환(☎044-201-4219, 4223)
	항공정책과		• 과장 윤진환, 사무관 권미정(☎ 044-201-4204)
보 도 일 시		2018년 8월 17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17.(금), 10:00부터 보도 가능	

진에어 · 에어인천 면허취소 안기로 결정

- ‘갑질’ 물의 진에어, 일정기간 신규노선 등 불허기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청문(7.30, 8.6), 이해관계자 의견수렴(7.17~8.6), 전문가 법리검토, 면허자문회의(8.16)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.

《 사실관계 》

-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(조 에밀리 리)이 ‘10.3~’16.3월까지 등기 임원으로 재직할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하였음.
-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‘12.5~’14.11월까지 등기 임원으로 재직할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하였음.

《 법률적 검토 》

- 외국인 임원 재직은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, 구 항공법* 제129조제1항 제3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.

* 항공법은 '17.3월 항공사업법으로 개정되었고, 항공사업법 시행 전에 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을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

◆ 구항공법 제114조, 항공사업법 제9조(면허 결격사유)

...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...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2.~4. (중 략)

5.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

제6조(항공기 등록의 제한) ①(생략)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4. 제1호부터 ...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...사실상 지배하는 법인

5. 외국인이 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등기부상 임원의 1/2이상을 차지하는 법인

◆ 구 항공법 제129조, 항공사업법 제28조(면허 취소사유)

① ...다만, 제1호·제2호·제3호...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

1.~2. (생 략)

3.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. 다만, 제114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..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한편, 항공법상 결격사유에 대한 면허취소 조항은 '08년까지 기속 행위(필요적 취소)였으나 '08년~'12년에는 재량행위(임의적 취소)로 변경되었고, 다시 '12년부터 기속행위로 개정되었음.

- 법리적으로, 양사와 같이 면허 결격사유가 임의적 취소사유와 필요적 취소사유에 걸쳐있는 경우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시 공익과 사익간 비교형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음.

《 면허 자문회의 결과 》

□ 법률·경영·소비자·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 자문 회의에서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며,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·적용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음.

② 그러나,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(진에어)과 수코레브릭(에어인천)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,

- 반대로, 이 조항을 들어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, 소비자 불편,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,
-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,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음.

③ 다만,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.

《 종합 결론 및 항공산업 체질개선 추진 》

- 국토부는 그동안의 법률자문, 청문,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
 -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, 예약객 불편,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.
- 이와 함께,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,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하였음.

-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‘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’이 충분히 이행되어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임.

*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, 사외이사 권한 강화, 내부신고제 도입,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(노조 조사단 등)

-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9일 공정위, 복지부, 고용부와 함께 발표한 「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.

- 고용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‘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’을 발표(7.18)하였고,

* 「근로기준법」 개정 등 후속조치 진행중, 괴롭힘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·제공 계획

- 공정위는 한진그룹 기업집단 지정시 4개 계열사 누락 혐의 등으로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(8.10)하였음.

- 복지부는 스투어드십코드를 도입(7.30) 하였고, 향후 기업·주주 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예정임.

- 국토부는 항공사 대표·등기임원 자격 및 겸직제한 기준 신설 등 면허체계 개편을 위한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음.

-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,

-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여 9월중 발표할 계획임.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좌명환 사무관 (☎ 044-201-4223) ·홍승희 사무관(☎ 044-201-42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

1

진에어와 에어인천의 청문 등 법적절차 진행경위는?

- 국토교통부는 지난 4.12일 조현민의 이른바 ‘물컵’ 사건 최초 보도 이후 미국 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하여 과거 진에어 등기 이사로 재직(‘10.3~’16.3)한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,
 -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하던 중, 지난 6.29일에 **법령상 면허취소 여부 결정 절차에 착수**하고, 추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를 진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.
- 이후 에어인천도 과거 외국인 임원재직 사실이 확인(7.10)되었고,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**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위한 구 항공 법령 및 행정절차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**하였음.
 - ①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2차례 **청문**(7.30, 8.6)과 직원·협력사·주주 등 이해관계자 **의견수렴**(7.17~8.6, 서면·온라인) 및 **간담회**(8.2)를 실시함.
 - ② 법무법인의 추가 법률자문과 함께 행정법·헌법 교수, 변호사 등과의 **법률전문가 회의**(8.9) 등을 통해 **면밀한 법리검토**를 진행하였음.
 - ③ 청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소명내용, 전문가 법리검토 내용을 토대로 **면허 자문회의**(8.16)를 개최하여 법률·경영·소비자·교통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음.

2

당초 세차례 청문을 거칠 것으로 얘기가 많았는데, 서둘러 발표한 배경이 있나?

- 「행정절차법」은 청문 횟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,
 - 청문 및 법무법인·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검토를 하였으며, 항공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발표하게 된 것임.

3

지난 4월에 발생한 사건을 놓고 면허를 취소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끌어서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워왔는데?

- 관계 법령상 면허발급 또는 취소 시에는 청문,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 법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,
 - 청문 등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번에 결정하게 된 것임.

4

면허취소는 안 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다른 제재수단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지?

- 구 항공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면허취소 여부 외에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은 할수 없음.
 - * 세부 처분기준을 정한 구 항공법시행규칙에서도 제296조의2 및 별표 59에서 면허취소만 규정하고 있고, 과징금 부과 근거조항은 면허취소 조항을 미포함
- 다만, 이와 별도로 갑질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당분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,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하였음.

5

**다수의 전문가 기고, 청문 등에서 지적된
외국인 임원 관련 조항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?**

- 청문 뿐만 아니라, 법률자문회의 등에서 해외 사례(외국인 임원 1/3 ~ 1/2 이상 금지) 등을 근거로 **과도한 제한**이라고 지적되었음.
- 향후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여건과 발전방향, 해외의 기준 등을 **종합적으로** 감안하여 **개선방안**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.

6

청문에서 진에어가 소명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?

- 외국인 임원 제한 규정간 **상충**이 있고, 외국인 임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은 **법이 과도하며**, 근로자, 주주, 예약객 피해 등을 고려시 **신뢰 보호**가 필요하다고 주장.
 - 또한, 조현민이 외국인이긴 하나, 면허 **결격** 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하였음.
- 이와 함께 **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대책*** 등도 제시하였음(8.14)
 - *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, 사외이사 권한 강화, 내부신고제 도입,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(노조 조사단 등)
- 앞으로 국토부는 진에어가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대책이 **제대로** 이행되는지 **점점** 해나갈 계획이고,
 -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진에어의 경영이 **정상화**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등을 제한할 예정으로,
 - 항공사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하고, **건전한 노사관계, 투명하고 공정한 직장문화**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음.

1 의사결정 체계 정비 및 경영 투명화

- (타계열사 결재배제) 최종 결재는 대표이사가 하고, 한진칼·대한항공 등 타계열사 임원의 결재(승인 또는 합의) 배제(→즉시)
- (이사회 역할 확대) 이사회 개최빈도 및 의결사항 확대 등 역할 강화(→'18.9월 이사회에서 의결)
 - * (현행: 분기1회) 주총 소집, 대표선임 등 상법·공정거래법상 이사회 안건 → (개선: 격월) 주요 안전현안, 20억이상의 신규 투자 등도 이사회에서 의결
- (사외이사 확대)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회 구성의 과반으로 확대 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투명화(→'19.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)
 - *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친인척을 배제하고, 법조·회계·항공 등 전문가 선임

2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

- (준법지원인) 항공법령 등 준수여부 모니터링, 내부거래 적법성 검토 등을 위해 준법지원인 선임 및 통제기준 설정(→'18.10월)
- (전문가) 외부전문가 준법 지원 시스템 구축(→'18.10월)
- (내부비리 신고제도) 익명제보 시스템 도입(→'18.12월)
- (국토부와 소통강화) 법령해석 등 즉시 문의, 정부정책 적극 반영

3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

- (임원 평가) 보직 적합성 매년 정기심사(→'19.1월), 반기별 리더십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등을 통해 권위적·상명하달 문화 근절
- (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) 직장내 괴롭힘과 인권침해 신고 등에 대해 익명 보장 및 조속 내사, 하고, 노조 위원을 조사단에 포함
- 신규설립된 노조('18.7월설립)과 상생·협력('18.12월 상생선언 계획), 노사협의회 안건에 대해 분기 점검

4 비전 재설정·공표 및 사회공헌 확대

- 사회공헌, 준법·윤리 의식 등을 부각하여 비전, 미션 등을 재설정 하고 대외 공표(→'18.12월), 사회공헌 행사 지속 확대 등